

의안검토보고

의안번호	제118호		
의안명	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		
제출자	서초구청장(기획예산과)	제출년월일	2019.06.03.
위원회	행정복지위원회	전문위원	심경석

I. 제안내용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, 안정성,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문화예술진흥기금 : 서리풀페스티벌 추진
-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: 장애인복지사업 추가 공모 등,
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건전 육성

3. 기금변경안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2018년도말 조성액 ①	2019년도 조성계획			2019년도말 조성액 ②=(④+①)	비고
		수입 ③	지출 ④	증감 ⑤=(③-④)		
문화예술 진흥기금	0	3,933,140	1,262,000	2,671,140	2,671,140	문화 예술과
사회복지기금 (장애인복지계정)	1,548,650	27,750	261,200	△233,450	1,315,200	사회 복지과

II. 검토사항

1. 법적근거 및 절차

○ 기금운영계획의 변경

⇒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20%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

○ 기금재원조성 및 관리 관련 조례

-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

⇒ 제2조(기금의 설치), 제3조(기금의 재원 및 보고), 제4조(기금의 용도), 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

-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

⇒ 제3조(설치), 제5조(자금구분), 제6조(장애인복지계정)

2. 자금운용계획

1) 문화예술진흥기금

(단위 : 천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
항 목	수입액	기정액	증감	항 목	지출액	기정액	증감
합 계	3,933,140	3,933,140	0	합 계	3,933,140	3,933,140	0
전 입 금	3,880,000	3,880,000	0	비용자성 사업비	1,231,000	531,000	700,000
이 자 수 입	53,140	53,140	0	인력운영비	31,000	31,000	0
				예치금	2,671,140	3,371,140	△700,000

○ 동 기금은 서초음악문화지구 지정에 따라 문화지구 육성 재원확보 및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서,

기금의 재원은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3,880,000천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,933,140천원을 수입으로 편성함.

-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비용자성사업비 기정액 531,000천원에서 700,000천원을 증액한 1,231,000천원, 예치금은 기정액 3,371,140천원에서 700,000천원을 감액한 2,671,140천원으로 편성하였고,
 - 비용자성사업비에는 ‘서리풀페스티벌 추진’을 위한 서초문화재단 출연금 700,000천원으로 편성함.
 - ‘서리풀페스티벌 추진’은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(기금의 용도) 제4호¹⁾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.

1) 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.

1.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8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문화지구로 지정된 서초음악문화지구(이하 “문화지구”라 한다) 운영협의체 운영지원 등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
2.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 용자 또는 권장시설 입주를 위한 건물 임차 지원
3. 문화지구 내 건물 소유자에 대한 권장시설의 신축·개축 또는 대수선비의 용자
- 4. 지역 문화예술 행사 등 지원**
5. 문화예술인,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 등 문화활동 지원
6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
7.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

2)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

(단위 : 천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
항 목	수입액	기정액	증 감	항 목	지출액	기정액	증 감
합 계	1,576,400	1,576,400	0		1,576,400	1,576,400	0
예치금회수	1,548,650	1,548,650	0	비용자성사업비	261,200	61,200	200,000
이자수입	27,750	27,750	0	예치금	1,315,200	1,515,200	△200,000

- 동 기금은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서, 기금의 재원은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(장애인복지계정)에 따라 예치금회수 1,548,650천원과 이자수입 27,750천원을 포함하여 1,576,400천원을 수입으로 편성함.
-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비용자성사업비 기정액 61,200천원에서 200,000천원을 증액한 261,200천원, 예치금은 기정액 1,515,200천원에서 200,000천원을 감액한 1,315,200천원으로 편성하였고,
 - 비용자성사업비에는 ‘장애인 복지사업 공모’를 위한 민간이전 100,000천원과 ‘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건전 육성’을 위한 민간이전 100,000천원으로 편성함.
 - ‘장애인 복지사업 공모’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 등 돌봄활동을 지원하며,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 등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공모하여 채택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.
 - ‘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건전 육성’ 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건전육성을 지원하고 관내 장애인 기업 등 장애인 자활을 지원하며, 장애인가족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.

- '장애인 복지사업 공모 등'은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(장애인복지계정)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2)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고, '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건전 육성'은 동 조례 제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.

Ⅲ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예산총계 주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 운용되고 있으나,
- 기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」상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·운용하고 있는 것으로,
- 각 기금별 설치근거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과 기금자산의 안정성·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검토가 요구됨.

2) 제6조(장애인복지계정)

- 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 1.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
 2. 장애인 복지 및 문제에 대한 조사, 연구
 3.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, 행사 지원
 4. 장애인단체의 지도 및 건전한 육성
 5. 장애인 자활지원
 6.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IV. 참고자료

< 관계법령 >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 -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「지방자치법」
 -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-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 - 제2조(기금의 설치 등)
 - 제3조(기금의 재원 및 보고)
 - 제4조(기금의 용도)
 - 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
-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 - 제3조(설치)
 - 제5조(자금구분)
 - 제6조(장애인복지계정)

관 계 법 령

◆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<개정 2015.7.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7.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◆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◆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2조(기금의 설치 등)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기금의 재원 및 보고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 서초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
3. 개인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탁금
4. 그 밖의 수입금

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.

1.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8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문화지구로 지정된 서초음악문화지구(이하 “문화지구”라 한다) 운영 협의체 운영지원 등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
2.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 용자 또는 권장시설 입주를 위한 건물 임차 지원
3. 문화지구 내 건물 소유자에 대한 권장시설의 신축·개축 또는 대수선비의 용자
4. 지역 문화예술 행사 등 지원
5. 문화예술인,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 등 문화활동 지원
6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
7.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
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
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◆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3조(설치)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, 노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5조(자금구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.

1. 장애인복지계정
2. 노인복지계정
3. 자활계정
4. 사회복지진흥계정

② 제1항에 따른 각 계정자금은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, 운용자금은 적립자금,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.

제6조(장애인복지계정)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 서초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
2.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
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
2. 장애인 복지 및 문제에 대한 조사, 연구
3.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, 행사 지원
4. 장애인단체의 지도 및 건전한 육성
5. 장애인 자활지원
6.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